

업 체 명

수신자 시·도지사
(경유)

제 목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(년 분기)

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을 보고합니다.

상 호		허가번호	
대 표 자 성명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사업장 소재지		생 산 구 분	[] 먹는샘물 [] 먹는염지하수 [] 기타
원수 구분		총 취수량(㎥)	샘물: 염지하수: 기타샘물:
구분 취수량	① 전 분기말 계측기 지침(㎥)	② 당해 분기말 계측기 지침(㎥)	②-①(㎥)
계			
1호정			
2호정			
3호정			
·			
·			

- 붙임: 1. 취수량·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
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발 신 명 의 직인

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보고자

(서명 또는 인)